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서식(을)](2019.03.20 개정)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주요계정명세서(을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재고자산 · 유가증권 평가

① 자 산 별		② 신고방법	③ 평가방법	④ 회사계산 금 액	조정계산금액		⑦ 조 정 액 (⑤ 또는 ⑤와⑥ 중 큰 금액-④)
					⑤ 신고방법	⑥ 선입선출법	
⑩① 제 품 및 상 품							
⑩② 반제품 및 재공품							
⑩③ 원 재 료							
⑩④ 저 장 품							
유가증권	⑩⑤ 채 권						
	⑩⑥ 기 타						
⑩⑦ 합 계							

2. 국고보조금 등 · 공사부담금 · 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
⑧ 구 분	⑨ 금 액	⑩ 취득자산가액	⑪ 회사손비계상액	⑫ 한도초과액 (⑪-⑩)	⑬ 미사용분 익금산입액
⑩⑧ 국고보조금등					
⑩⑨ 공사부담금					
⑪⓪ 보 험 차 익					

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
적 수			⑰ 인정이자	⑱ 회사계상액	⑲ 조정액
⑭ 가지급금	⑮ 가수금	⑯ 차 감(⑭-⑮)			

4. 건설자금이자 조정

⑳ 구 분	㉑ 건설자금이자	㉒ 회사계상액	㉓ 상각대상자산분	㉔ 차감조정액(㉑-㉒-㉓)
⑪① 건설 완료 자산분				
⑪② 건설 중인 자산분				
합 계(⑪①+⑪②)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재고자산・유가증권 평가

가.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.

나. ④ 회사계산금액, ⑤ 신고방법,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⑬ 회사계산금액, ⑮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과 ⑱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⑩ 합계란은 [별지 제39호서식]의 ⑬ 회사계산금액, ⑮ 신고방법금액, ⑰ 선입선출법금액 및 ⑱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.

2. 국고보조금등・공사부담금・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

가. ⑨ 금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① 보조금수령액, ⑩ 공사부담금가액 및 ㉑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나. ⑩ 취득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, ⑮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계 및 ㉖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⑪ 회사손비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⑧・⑰・㉘의 회사계상액 및 ⑨・⑱・㉙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라.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[별지 제35호서식]의 ㊲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
3.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

가.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가지급금적수(②+⑫)의 계란과 가수금적수(③+⑬)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나. ⑰ 인정이자와 ⑱ 회사계상액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인정이자(⑤+⑯)란과 회사계상액(⑥+⑰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 ⑲조정액란은 [별지 제19호서식(갑)]의 조정액(⑨+⑳)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4. 건설자금이자 조정

㉑ 건설자금이자, ㉒ 회사계상액, ㉓ 상각대상자산분 및 ㉔ 차감조정액은 [별지 제25호서식]의 ① 건설자금이자, ② 회사계상액,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